

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

업체명				
대표자				
생산제품명				
사용원료	주원료 (주재료)		부원료 (부재료)	

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주원료 (주재료) 전량을 국산 농수산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자

(서명 또는 인)